

서울중앙지방법원 2024. 12. 18 선고 2024나19521 판결 [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 등]

재판경과

서울중앙지방법원 2024. 12. 18 선고 2024나19521 판결

서울중앙지방법원 2024. 3. 14 선고 2022가단5260053 판결

전문

원고, 항소인A종중

소송대리인 법무법인(유한) 현

담당변호사 김용일, 김사무엘

피고, 피항소인1. B

2. C

3. D

4. E

5. F

6. G

7. H

피고 1 내지 7의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승섭

8. 주식회사 I

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안다

담당변호사 김종무

변론 종결2024. 11. 13.

판결 선고2024. 12. 18.

제1심판결서울중앙지방법원 2024. 3. 14. 선고 2022가단5260053 판결

주 문

1.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.
2.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.

N

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

제1심판결을 취소한다.

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, 가. 피고 주식회사 I는 피고 E에게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 가평등기소 2022. 4. 26. 접수 제8770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, 나. 피고 E은, 피고 B에게 3/15 지분에 관하여, 피고 C, D, F, G, H에게 각 2/15 지분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 가평등기소 1997. 6. 27. 접수 제9020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, 다. 원고에게, 피고 B은 3/15 지분에 관하여, 피고 C, D, E, F, G, H은 각 2/15 지분에 관하여 각 이 사건 소장 송달일자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.

이 유

1. 제1심판결의 인용

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에다가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를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. 이에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,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인용한다.

2. 결론

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.

재판장판사선의종

판사정덕수

판사윤재남

별지